정보전략운영지침

ICT전략실 정보기획부

전부개정 2021. 12. 03. 지침 제353호 개정 2022. 12. 28. 지침 제387호 개정 2023. 12. 06. 지침 제411호 개정 2024. 06. 13. 지침 제427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정보전략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다른 법령등과의 관계)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의 정보전략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다른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12.28., 2024.6.13.>
 - 1. "정보화"란 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적용·융합 하여 심사평가원 업무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 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정보시스템"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 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 - 3. "정보통신"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·기술·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.
 - 4. "정보통신망"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

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
- 5. "정보자원"이란 정보,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 자원,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및 정보기술, 정보화예산,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.
- 6. "ICT(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, 정보통신기술)"란 정보시스 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말한다.
- 7. "정보처리"란 정보시스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획득 및 가공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얻는 과정을 말한다.
- 8. "프로그램"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처리 과정을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 집합을 말한다.
- 9. "EA(Enterprise Architecture, 정보기술아키텍처)"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, 응용, 데이터, 기술,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.
- 10. "정보화업무 개발"이란 정보시스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 등을 유통·가공·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 등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.
- 11. "업무정보화관리시스템"이란 정보화업무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요청부서 와 개발 수행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심사평 가원의 시스템을 말한다.
- 12. "정보화사업"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·구축·운영·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13. "정보화사업 관리부서"란 「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」제3조제9호에 따른 사업주관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.
- 14. "구성정보"란 정보시스템의 구성내용(시스템 정보, 계정정보, 권한정보, 프로그램 등)을 식별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- 15. "ICT센터"란 심사평가원의 주 전산기기가 설치·운영되는 곳으로 전산장비, 주변기기, 네트워크장비, 보조기억장치 등 전산운영에 필요한 설비로 구성된 장소를 말한다.
- 16. "LAN"이란 구내선로,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,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, 패치판넬/코드 및 접속상자(Outlet-Box)와 구내단자함

등의 시설물을 말한다.

- 17. "IP(Internet Protocol)주소"란 모든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말한다.
- 18. "데이터"란 심사평가원에서 생성하거나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전 자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.
- 19. "데이터베이스"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.
- 20. "데이터 값"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항목의 실제 값을 말한다.
- 21. "업무규칙"이란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적인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의미한다.
- 22. "데이터 정합성"이란 데이터 값이 서로 모순이 없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23. "데이터 품질"이란 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,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.
- 24. "데이터 품질진단"이란 데이터 값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값이 업무규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.
- 25. "데이터 품질관리"란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,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26. "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"이란 데이터 품질의 측정, 분석, 개선, 통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·운영하는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말한다.
- 27. "표준코드"란 심사평가원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표준을 정의한 것으로, 전사 업무 수행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와 코드 값을 1:1로 정하여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.
- 28. "데이터 표준화"란 정보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의 명칭, 정의, 형식,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9. "데이터 표준화 시스템"이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표준 사전(단어, 용어, 도메인, 코드 등)을 관리하여 전사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

할 수 있도록 구축·운영하는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말한다.

- 30. "사무자동화기기"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등 관련 하드웨어를 말한다.
- 31. "사무자동화기기 관리시스템"이란 사무자동화기기의 대여·반납 및 현황 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말한다.
- 32. "소프트웨어"란 컴퓨터·통신·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 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.
- 33. "소프트웨어의 관리"란 소프트웨어의 취득, 이용,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.
- 34. "주관부서"란 ICT전략계획 수립,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 예산·인력의 관리 등 정보전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, 주관부서의 장을 "주관부서 장"이라 한다.

제2장 정보화 기획 및 관리 제1절 정보화 기획

- 제4조(ICT전략계획)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심사평가원의 정보전략업무 발전 및 효율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ICT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ICT전략계획을 수립한다.
 - ② ICT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ICT전략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경영환경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
 - 3. 정보화 개선과제 및 개선과제별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정보전략업무 발전 및 효율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ICT전략위원회) ① 원장은 ICT전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 의결하기 위하여 ICT전략위원회(이하 "전략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제4조에 따른 ICT전략계획에 관한 사항
- 2. ICT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정보화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ICT전략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전략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되며, 위원장
-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내의 1급 직원(예산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각 1급 직원 포함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6.13.>
- ④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ICT전략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이 된다.
- ⑤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⑥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·수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6.>
- ⑦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12.6.>
- ⑧ 전략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내용은 안건과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6.13.>
- 제6조(ICT전략실무위원회)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ICT전략실무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30명 이내의 2급 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12.6., 2024.6.13.>
 -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ICT전략업무를

담당하는 3급 직원이 된다.

-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⑥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7조(ICT전략자문위원회)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ICT전략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ICT전략자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전략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되며, 위원장
 -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내
 -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ICT전략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이 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의 내·외부 정보화 전문가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6.13.>

-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 참석, 개별 방문 등의 대면방식 또는 서면, 유선 등의 비대면방식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자문활동을 수행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EA 관리·운영) 원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EA를 도입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·수행하여 정보전략업무가 지속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정보화 권고) 주관부서장은 신기술의 출현이나 업무처리과정의 변화 등에 따라 업무의 정보화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2절 정보화 관리

- 제10조(정보화업무 개발) ① 각 부서의 장(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신 규 정보화업무 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 등의 수정·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정보화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화업무 개발 수행부서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개발수행부서장"이라 한다)에게 개발 범위, 내용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정보화업무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② 개발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, 개발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용량, 투입 인력 및 비용, EA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개발하거 나 외부에 위탁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.
 - ③ 개발수행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, 제1항에 따라 정보화업무 개발을 요청한 부서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개발요청부서장"이라 한다)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개발요청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한 내역을 보완하여야 한다.
 - ④ 개발수행부서장은 자체 개발한 경우 해당연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시 관련 EA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외부에 위탁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EA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정보화사업 사전검토)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차기년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·심의 일정과 사전검토 작성서식을 각 부서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(이하 "사업수행부서장"이라 한다)은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현황, 문제점,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한 후, 그 결과를 해당 사업수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인프라 설계 및 소요예산 적정 산정 여부
 - 2. 기능점수 등 응용개발비 적정 산정 여부
 - 3. 정보자원의 중복도입 및 재사용성 여부
 - 4.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여부
 - 5. 「정보보안지침」 준수 여부

- 6.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
- 7.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여부
- 8.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사업수행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등) ① 사업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 - 1. 심사평가원 경영전략과의 연관성
 - 2. 추진계획의 구체성
 - 3.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
 - 4. 기술적 타당성
 - 5. 소요예산의 적정성
 - 6. 기타 예산 편성 기준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 산정 여부를 사전심의하여야 한다.
 - ③ 정보화사업 예산 사전심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3조(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) ① 정보화사업 관리부서(이하 "사업관리부서" 라 한다)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」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6.13.>
 -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서 작성 시 「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」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다.
- 제14조(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자의 제안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지침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안요

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4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제1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, 제안요청서 등에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제11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,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④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 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제5조에 따라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및 모델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없다.
- ⑤ 제안요청서에 작성하는 세부내용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5조(감리)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제71조에 따른 정보화사업
 - 2.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공사
- 제16조(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) ① 원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과업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과업내용의 확정
 - 2.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 조정
 - 3.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
 -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」제45조,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서, 제안요청서 및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사업관리부서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 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.
- ⑥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·수신할 수 있다.
- ⑦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7조(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54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제7조, 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검토하고, 직접구매하지 않을 경우 추진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품목별 제외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5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,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보건복지부 사전검토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에 대한 EA기반 검토, 보안성 검토 등을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에 대하여 「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」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,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계획에 따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자체검토하거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④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제2항 혹은 제3항에 따른 검토

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행정안전부 사전협의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,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」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체검토결과서의 분야 별 항목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, 이행실태 점검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 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0조(계약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제안요청서 사전공개, 입찰공고,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방법 등 정보화사업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「계약사무처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1조(착수계 승인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제39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착수계를 제출받아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착수계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하도급 관리)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5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」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.
- 제23조(EA 현행화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검사 및 인수 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EA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자원 속성 및 관련 정보
 - 2. 정보화사업 속성 및 관련 정보

- 3. 그 밖에 EA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받은 EA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
 후 EA시스템에 현행화 반영하여야 하며,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4조(검사 및 인수)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기능·기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검사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확인하여야 하고, 감리사업인 경우 감리 사업자가 제출한 감리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제20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제56조제2항을 따른다.
 - ④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사업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목 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 -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제58조를 따른다.
 - ⑥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제18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제3장 ICT교육 운영·관리

- 제25조(ICT교육) 주관부서장은 정보화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원의 역 량향상을 위하여 ICT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ICT교육을 운영·관리한다. <개정 2023.12.6.>
- 제26조(ICT교육운영계획) ① 주관부서장은 효과적인 ICT교육 운영을 위하여 역가 ICT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6.>

- ② ICT교육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ICT교육 운영 기본방향
 - 2. ICT교육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
 - 3.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7조(ICT교육운영위원회) ① ICT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ICT교육운영위원회(이하 "교육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12.6.>
 - 1. ICT교육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
 - 2. 인사 등 타 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주요사항
 - 3. 그 밖에 ICT교육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2급 직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교육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ICT교육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이 된다.
 - ⑤ 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소집·심의·의결 방식을 준용한다.
- 제28조(ICT교육운영실무위원회) ① 제27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 실무검토 및 ICT교육 운영 관련 일반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ICT교육운영실무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교육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교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ICT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이 되며,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교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2급·3급 직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교육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ICT교육업 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이 된다.
 - ⑤ 교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소집·심의·의결 방

식을 준용한다.

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29조(ICT교육 운영) ① 주관부서장은 ICT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교육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제30조(ICT교육 대상자 선발) 주관부서장은 직급·담당업무·교육이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직원을 ICT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.
- 제31조(ICT교육 평가) ① 주관부서장은 ICT교육의 성과 및 교육 참여 직원의 성취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의 성취도 평가를 수행할 때에 학습태도, 과제수행능력, 근태 등으로 평가요소를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제32조(ICT역량관리) ① 주관부서장은 효율적인 ICT교육 운영과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ICT교육 이수 및 직무·수행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다.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이력 정보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

제4장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 제1절 정보시스템 관리·운영

- 제33조(정보자원 통합관리)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②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8., 2024.6.13.>
 -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, 매월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정보시스템 사용현황 정보를 수집·분석 등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④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수행하

여야 한다. <신설 2022.12.28.>

- 1. 정보자원 기본·구성정보
- 2. 정보자원 도입(사업)정보
- 3. 그 밖에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주관부서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ICT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하며, 각 부서의 장은 ICT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2.28.>
- ⑥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22.12.28.>
- 제34조(정보시스템 성과관리) ① 주관부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「전자 정부 성과관리 지침」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의 측정 대상, 범위, 지표는 「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,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,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④ 주관부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시 제2항에 따른 성과 측정 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관리·운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제35조(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) 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주관부서장에게 사용자 계정 또는 권한(이하 이 조에서 "사용자 권한" 이라 한다)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업무 수행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직원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, 부여한 사용자 권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(이하 이 조에서 "사용자"라 한다)은 사용자 권한에 등록된 사용자명을 이용하여야 하며, 관련 구성정보를

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구성정보의 추가·삭제·수정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.

- ④ 사용자는 사용자 권한에 등록된 업무 외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를 열람·처리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주관부서장에게 새로운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사용자 권한 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사용자 권한 변경 및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검토·승인하여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주관부서장은 사용자 권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권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4.6.13.]

- 제36조(정보시스템 중단 예고) ①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증설·교체 등 시스템작업 또는 자료정비작업을 위하여 시스템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대외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.
- 제37조(비상대책 및 장애처리)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등 주요 시설 및 장비(이하 이 조에서 "시설·장비"라 한다)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여 자연적·인위적 재해로부터 시설·장비를 보호하고, 시설·장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시설·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재해복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 시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시설·장비에 대한 장애복구 시 유지보수업체 등의 지원이 필 요한 경우 유지보수업체 등에 장애상황 및 지원요청 사항 등을 통보하여 복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8조(재해복구 시스템 운영)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과 관련

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 최소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내 재해복구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재해복구시스템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국민포털시스템
- 2. 심사시스템(HIRA+)
- 3.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
- 4.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
- 5.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(DUR)
- 6.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
- 7.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시스템
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장애발생에 대해 즉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가능하 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경우 재해복구시스템 에서 ICT센터로 전환·복귀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39조(ICT센터 운영)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ICT센터 의 운영과 관련하여 「정보보안지침」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ICT센터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ICT센터에 지정된 근무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버 운영, 장비설치, 유지보수 등을 위해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있다.
 - ④ ICT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절 정보통신망 관리·운영

- 제40조(정보통신망의 설치·운영)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전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·확장 및 최신장비의 도입·교체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의 요청 또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에 따른 LAN의 신

규 설치 및 증설·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- 제41조(외부기관과의 연동)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외부기관과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 「정보보안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외부기관과 연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소요장비의 확보
 - 2. 장애처리 및 보안대책
 - 3. 정보통신망 운영·관리상의 제반사항
 - 4. 「정보보안지침」제39조에 따른 내부망 보안관리
 -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외부기관과 연동할 경우 연결방법, 소요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연동하고자 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42조(IP주소 관리) ① 심사평가원의 내부 정보통신망은 사설IP주소를 사용하고 외부 정보통신망은 공인IP주소 또는 사설IP주소를 사용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본원의 각 부서 및 본부(이하 이 조에서 "각 부서"라 한다)에 부서(본부)단위로 IP주소를 배정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③ 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IP관리자를 지정하며, 부서의 IP관리자는 각 부서 내 사용자에게 IP주소를 배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각 부서의 장은 IP주소를 추가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, IP주소를 추가로 배정받은 때에는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장 정보자료 및 중요자료 관리 제1절 정보자료 관리

제43조(데이터 표준·품질관리 운영) ① 주관부서장은 데이터의 고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·품질을 관리한다.

- ② 주관부서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 예 방적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데이터 표준·품질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정의
 - 2. 데이터 표준·품질 관련 대내외 요구사항 반영
 - 3.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등록
 - 4.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산출물 작성
 - 5.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
 - 6. 업무규칙 작성 및 데이터 값 점검
 - 7. 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현행화
 - 8. 그 밖에 데이터 표준·품질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- ③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데이터 품질 목표 설정
 - 2.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
 - 3.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
 - 4. 데이터 표준 및 구조 점검
 - 5. 데이터품질관리협의체 운영
 - 6. 그 밖에 데이터 표준·품질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
- ④ 데이터 표준·품질관리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4조(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) ① 주관부서장은 데이터의 표준·품질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데이터 품질진단 업무규칙의 실행 및 모니터링, 오류 개선 등
 - 2. 데이터 표준·구조·데이터베이스·모델도구 관리
 - 3.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관리
 - 4.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업무데이터를 관리·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하는 데이터의 표준·품질 관

리를 위하여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④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소관 데이터에 대한 업무규칙 관리
 - 2.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관리(표준코드 관리를 포함한다)
 - 3.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, 품질점검 및 개선관리
 - 4. 그 밖에 소관 데이터의 표준·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45조(정보자료 보존관리) 주관부서장은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에 수록된 정보자료(이하 같은 절에서 "정보자료"라 한다)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오손방지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정보자료의 안전관리 및 이용)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자료관리담당자는 정보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정보자료의 백업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정보자료관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부서에서 정보자료의 백업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파손 등에 대비하여 백업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제47조(정보자료의 관리·삭제) ① 주관부서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료에 대하여는 「정보보안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.
 - ② 정보자료관리담당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자료에 대하여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및「기록물관리규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.
 - ③ 정보자료관리담당자가 중요한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삭제할 때에는 주관부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절 중요자료 소산관리

제48조(중요자료) 중요자료란 파괴, 멸실, 훼손 시 복구 작업의 비용이나 시간 이 막대하게 소요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전산파일을 말하며, 중요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스템파일
- 2. 응용프로그램파일
- 3. 심사, 평가, DUR 데이터베이스 파일
- 4. 데이터웨어하우스 파일
- 5. 포털 관련 파일
- 6. 그밖에 주관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파일
- 제49조(중요자료의 소산) ① 주관부서장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서울본부를 소산처로 지정하고 중요자료의 부본을 소산처에 소산하여 위탁·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② 주관부서장과 서울본부장은 소산처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③ 주관부서장과 서울본부장은 매월 중요자료 부본의 생성 및 해제를 통해 소산을 실시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④ 주관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자료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중요자료를 재생성하여 소산할 수 있다.
 - ⑤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산처의 공사·이전 등으로 중요자료의 소산이 어려운 경우,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를 소산처로 지정하여 위탁·보 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담당자와 사 전에 위탁 범위·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50조(소산관리 담당자) ① 주관부서장 및 서울본부장은 중요자료의 생성, 반입·반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소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② 소산관리 담당자는 중요자료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·확인하고 보안 또는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소산관리 담당자는 제49조에 따라 소산되는 중요자료의 반입·반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산전산파일 반출·반입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6장 사무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관리

제1절 사무자동화기기 관리

- 제51조(사무자동화기기 관리) ① 주관부서장은 PC, 모니터, 노트북 등의 사무 자동화기기(이하 "PC 등"이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C 등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PC 등 관리자는 PC 등을 취득·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(본부의 경우 주무부장)으로 한다. <개정 2023.12.6.>
 - ③ PC 등 관리자는 사무자동화기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PC 등의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. <개정 2022.12.28.>
- 제52조(사무자동화기기 취득·불용) ① PC 등 관리자는 PC 등의 내용연수 경과 및 사업 예산운영 등에 따라 PC 등을 취득할 수 있다.
 - ② PC 등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PC 등을 취득한 결과를 「물품관리지침」 제5조제2호에 따른 물품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PC 등 관리자는 「물품관리지침」 제23조에 따라 PC 등의 불용결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지침 제5조제1호에 따른 물품총괄책임자(이하 같은 조에서 "물품총괄책임자"라 한다)에게 해당 PC 등의 불용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부의 경우 각 본부의 장이 소관 PC 등의 불용결정 및 불용처리를 수행하고, 처리한 결과를 주관부서장과 물품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3.12.6.>

- ④ PC 등에 관한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「물품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53조(사무자동화기기 대여·반납) ① 업무 수행을 위하여 PC 등을 사용하고 자 하는 각 부서의 직원은 사무자동화기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PC 등 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② PC 등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역을 검토하여 업무 수행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PC 등을 대여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PC 등을 대여받은 직원(이하 같은 조에서 "사용자"라 한다) 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사무자동화기기 관리시스템을 통 해 반납 신청을 하고, 해당 PC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

- 1. PC 등의 교체
- 2.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부재
- 3. 기타 사용 사유 소멸 등
- ④ 사용자는 대여한 PC 등을 다른 사용자의 PC 등과 임의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⑤ PC 등의 대여·반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54조(사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)** ① PC 등의 유지보수는 「운영직관리세칙」에 따른 전산관리원이 수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원이 유지보수를 위해 PC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「정보보안지침」 제60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절 소프트웨어 관리

- 제55조(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) 원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·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,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1.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작성 및 보관(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 식의 작성·보관을 포함한다)
 - 2. 소프트웨어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
 - 3. 제5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
 -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
- 제56조(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) 원장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, 소프트웨어 부 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각 부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
 - 2.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에게 제1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

- 3. 그 밖에 각 부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
- 제57조(소프트웨어 구매) ①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 직전년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그 내역을 반영하여 구매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②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수요조사에 따라 요청받은 품목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,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을 선정한다.
 - ③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업무수행상 시급하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, 제2항에 따라 구매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개별 구매할 수 있다.
 - ④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별 구매가 필요 한 경우 가격, 구매조건 등을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.
 - ⑤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개별 구매를 완료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규격, 라이선스 증서 등을 포함한 구매내역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8조(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) ① 원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,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9조(소프트웨어 교육)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60조(소프트웨어 사용 준수사항) 심사평가원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.
 - 1.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심사평가원이 소유한 서버, PC 등에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
 - 2.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심사평가원이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CD, 디스크 및 복제물 등 사외 반출 금지
 - 3. 개인별 PC 등에서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
 - 4.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한 협력
 - 5.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

[전문개정 2024.6.13.]

제7장 보칙

- 제61조(정보보안)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전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접근, 해킹, 바이러스 침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전략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,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정보전략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을 대 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보보안을 위한 별도 방안을 수 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④ 주관부서장은 특정 정보전략업무를 외부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, 해당 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⑤ 정보전략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장

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기준 및 절차 등은 「정보보안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2조(비밀누설 금지) 각 위원회의 위원장, 위원, 간사 및 기타 관계자는 위원 회 안건 등과 관련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<2021.12.3., 지침 제353호>

이 지침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2.12.28., 지침 제387호>

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3.12.6., 지침 제411호>

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 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4.6.13.>

이 지침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의결서 <개정 2023.12.6.>

의 결 서						
1. 회의명:						
2. 심의안건 및 내용:						
3. 의결사항						
안건명	의결	기타의견				
	□ 찬성□ 반대					
위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위원	(인 또	또는 서명)				

[별지 제2호서식] 소산전산파일 반출·반입서

소산전산파일 반출·반입서

순번	파일명	파일내용	관리번호	매체구분	보관기간	소산파일 생성자	반출 (소산)	반입 (해제)

[※] 소산파일 생성자란은 소산파일 생성자와 반·출입자가 다를 때 서명란으로 사용

[별지 제3호서식]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

과 리 브 서

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- 0000년 0분기 -

과리단다자

과 리 채 이 자

판디	ナベ									#F	∃ ਰ ^ਾ	सम्ब	H 시
작성 약	일자	20									(인)		(인)
소프트워	어	소프트웨어	7 7 1	시리얼	도입 시	이용가능	라이선스	도입	보유	설치	라이선스	폐기	운영
고유번호	1	명칭 및 버전 ②	저작사	넘버 ③	버전 ④	버전 ⑤	유형 ⑥	일자	수량	수량 ⑦	기간 ⑧	일자 ⑨	부서

-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
-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
-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
-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
-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(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)
- ⑥ 볼륨, 패키지, 증서,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
-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
-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
-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

[별지 제4호서식]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

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- 0000년 0분기 -

관리담당자	관리책임자
(인)	(인)

연번	소프트웨어 명칭 ①	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②	PC 관리번호	사용자	설치일	서명
1						(인)
2						(인)
3						(인)
4						(인)
5						(인)
6						(인)
7						(인)
8						(인)
9						(인)
10						(인)
11						(인)
12						(인)
13						(인)
14						(인)
15						(인)
16						(인)
17						(인)

-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
-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